

목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265
----------	-----

□ 제안이유

-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 및 경영합리화 기반을 조성하고
-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구비한 단체는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코자 함

□ 주요내용

- 사업의 범위 (안 제2조)
 - 공공하수도사업, 하수종말처리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
- 관리자의 지정 (안 제4조)
 -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
- 특별회계 설치운영 (안 제8조)
 -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함
 - 공공하수도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사업은 본 특별회계로 통합
-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재정지원 (안 제12조)
 - 지역개발 투자사업 및 대규모 사업등 일반회계의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함
- 지방채 발행 (안 제14조)
 -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하는 지방채는 시장명의로 발행
-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(안 제18조)
 - 관리자는 사업의 현황 및 경리상황을 연2회 시장에게 제출
- 원시자본금 (부칙 제3항)
 -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1,174억원 으로 함.

□ 검토의견

-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지

방공기업법을 당연 적용(공기업으로 전환)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 시는 하수처리장이 기설치 되어 있어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공기업 전환은 필연적이며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부담체계의 명확화 및 과학화의 도모, 경영효율성의 제고 등의 필요성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함.